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 북 구
(기획예산과)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56
----------	----

제출년월일 : 2022. 11.

제 출 자 : 성북구청장

1. 제안이유

조례의 별표 기금별 존속기한에 장애인체육기금의 존속기한을 기존 2022. 12. 31.에서 2027. 12. 31.로 5년 연장, 한옥보전지원기금은 폐지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장애인체육기금 존속기한 연장
- 나. 한옥보전지원기금 폐지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1) 지방자치법

제159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 2)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 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사항 없음

다. 협의사항

1) 문화체육과 : 장애인체육기금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

2) 건축과 : 한옥보전지원기금 폐지에 관한 사항

라. 기타

1) 입법예고

- 예고기간 : 2022. 9. 29. ~ 2022. 10. 19. (20일간)

- 예고결과 : 의견제출 없음

2) 입법예고 방법 : 구보 및 구 홈페이지 게재

3) 비용추계 등 자료 작성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4) 인권/부패/성별/아동 영향평가

- 인권영향평가 결과 : 원안동의

- 부패영향평가 결과 : 원안동의

- 성별영향평가 결과 : 해당없음

- 아동영향평가 결과 : 해당없음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를 삭제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성북구 한옥보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① 제8조제1항 중 “성북구 한옥보전지원기금”을 “예산”으로 한다.

[별표]

기금별 존속기한(제4조 관련)

연번	기금 명칭	기금존속기한 (년)	근거법령	설치
1	통합재정안정화기금	2025. 12. 31 (5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	임의
2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 기금	2026. 12. 31 (5년)	「지방자치법」 제159조	임의
3	체육진흥기금	2026. 12. 31 (5년)	「지방자치법」 제159조	임의
4	재난관리기금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법정
5	자활, 장학금 등 서민생활안정기금	2026. 12. 31 (5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7	임의
6	노인복지기금	2026. 12. 31 (5년)	「지방자치법」 제159조	임의
7	양성평등기금	2026. 12. 31 (5년)	「양성평등기본법」 제42조	임의
8	식품진흥기금	-	「식품위생법」 제89조	법정
9	중소기업육성기금	2026. 12. 31 (5년)	「지방자치법」 제159조	임의
10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2026. 12. 31 (5년)	「지방자치법」 제159조	임의
11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2026. 12. 31 (5년)	「지방자치법」 제159조	임의
12	도로굴착복구기금	2026. 12. 31 (5년)	「지방자치법」 제159조	임의
13	옥외광고물정비기금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의2	법정
14	기후변화기금	2023. 9. 26 (5년)	「지방자치법」 제159조	임의
15	사회투자기금	2025. 12. 31 (5년)	「지방자치법」 제159조	임의
16	아동기금	2026. 12. 31 (5년)	「지방자치법」 제159조	임의
17	장애인체육기금	2027. 12. 31 (5년)	「지방자치법」 제159조	임의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제25조(한옥보전지원기금) ① 구</u> <u>에 소재하고 있는 보전가치가</u> <u>있는 등록한옥을 효율적으로 지</u> <u>원하기 위하여 한옥보전지원기</u> <u>금(이하 이 조에서 “기금”이라</u> <u>한다)을 설치한다.</u></p> <p><u>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u> <u>로 조성한다.</u></p> <p>1. <u>일반회계 전입금</u></p> <p>2. <u>기금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u> <u>금</u></p> <p>3. <u>그 밖의 잡수입 등</u></p> <p><u>③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u> <u>같다.</u></p> <p>1. <u>비한옥에서 한옥 신축 시 보</u> <u>조지원</u></p> <p>2. <u>한옥 외관, 내부 수선 시 보</u> <u>조 또는 용자지원</u></p> <p>3. <u>한옥의 부분수선 시 보조지</u> <u>원</u></p>	<p style="text-align: center;"><u><삭 제></u></p>																
<p>[별표] 기금별 존속기한(제4조 관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style="width: 5%;">연번</th> <th style="width: 20%;">기금 명칭</th> <th style="width: 15%;">기금 존속기한 (년)</th> <th style="width: 20%;">근거법령</th> </tr> </thead> <tbody> <tr> <td>1 ~ 13</td> <td></td> <td>(생 략)</td> <td></td> </tr> </tbody> </table>	연번	기금 명칭	기금 존속기한 (년)	근거법령	1 ~ 13		(생 략)		<p>[별표] 기금별 존속기한(제4조 관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style="width: 5%;">연번</th> <th style="width: 20%;">기금 명칭</th> <th style="width: 15%;">기금 존속기한 (년)</th> <th style="width: 20%;">근거법령</th> </tr> </thead> <tbody> <tr> <td>1 ~ 13</td> <td></td> <td>(생 략)</td> <td></td> </tr> </tbody> </table>	연번	기금 명칭	기금 존속기한 (년)	근거법령	1 ~ 13		(생 략)	
연번	기금 명칭	기금 존속기한 (년)	근거법령														
1 ~ 13		(생 략)															
연번	기금 명칭	기금 존속기한 (년)	근거법령														
1 ~ 13		(생 략)															

연도	기금 명칭	기금 존속기한 (년)	근거법령
14	한옥보전지원기금	2022. 12. 31 (5년)	「지방자치법」 제159조
15	기후변화기금	2023. 9. 26 (5년)	「지방자치법」 제159조
16	사회투자기금	2025. 12. 31 (5년)	「지방자치법」 제159조
17	아동기금	2026. 12. 31 (5년)	「지방자치법」 제159조
18	장애인체육기금	2022. 12. 31 (5년)	「지방자치법」 제159조

연도	기금 명칭	기금 존속기한 (년)	근거법령
〈삭 제〉			
14	기후변화기금	2023. 9. 26 (5년)	「지방자치법」 제159조
15	사회투자기금	2025. 12. 31 (5년)	「지방자치법」 제159조
16	아동기금	2026. 12. 31 (5년)	「지방자치법」 제159조
17	장애인체육기금	2027. 12. 31 (5년)	「지방자치법」 제159조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별표에 기금존속기한과 근거법령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비용 발생 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 제2항 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으로 비용추계서 미첨부함.

4. 작성자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장 김 종 호